붙임 : 2018년도 연말정산 구비서류

공제구분		대상자	서류명
인적공제	기본공제	▶전근로자(세대주확인 등) ▶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는 경우 ▶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(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)이하 가족구성원 ▶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,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▶**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는 인적사항을 별도로 꼭 기재** 바랍니다.(직전년도 공제받았던 경우도 다시 기재바랍니다. 기재않을시 공제 안됨!)	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(20세이하 - 1998.01.01이후출생) (60세이상 - 1958.12.31년 이전 출생)
	추가공제	▶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녀자공제, 한부모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▶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중증장애인) ▶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	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(수첩)사본, 상이증명서 ※연간소득금액 제한없음
보험료		▶생명, 상해, 손해, 공제 등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(연간 100만원한도)	보험료 납입 증명서
의료비		▶본인, 경로자, 장애인의 연간 의료비를 지급한 근로자 ▶기타자로서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연간 의료비를 지급한 근로자(3%초과가 없을 시는 공제해당이 없으므로 제출 불필요) ▶시력보정용 안경, 콘텍트랜즈 구입비용 : 1인 50만원한도 ▶난임시술비	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의료비영수증 안경사확인영수증 ※ 소득금액, 연령 제한없음
교육비		▶본인,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·자녀·형제자매가 유치원·어린이집 및 초·중·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(본인은 대학원 포함) ▶공제대상 교육비에는 등록금, 입학금, 수업료, 육성회비 등의 급식비, 방과후학교수업료, 교복구입비(중,고생 50만원 한도), 교과서대(초,중,고등생만), 체험학습비 ▶취학전 아동의 학원비	보육료,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증명, 재학증명서, 국외 교육비 요건 입증서류 등 ※ 연령 제한 없음
기부금		▶근로자등(기본공제 대상 배우자, 직계비속 추가됨)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(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, 기부금액, 기부일자, 기부내역 꼭 기재한 것에 한함) ▶정치자금 기부금	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'정치자금법' 등에서 정하는 영수증
주택자금		▶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불입한 근로자 ▶무주택세대의 월세액공제 (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아야함) ▶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▶무주택·1주택만을 소유 세대주의 주택자금차입금의 이자 상환 (1997.12.31. 이전가입분) ▶기준시가 4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 ▶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능	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증
연금저축 퇴직연금		▶ 연금계좌공제한도(700만원) = 연금저축(400만원) + 퇴직연금	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납입증명서
신용카드 현금영수증		▶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%초과시에 한함. ▶본인,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명의 카드사용금액도 공제가능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현금영수증사용금액